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1일, 이수진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 1. 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회의(2026. 3. 12.)

상정, 축조심사, 의결(원안가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6. 3. 13.)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수진의원)

현행법은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장·군수·구청장은 야

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주체로는 규정되어 있지만,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상황임. 시장·군수·구청장이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실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야간·휴일 소아진료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34조의2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은호)

개정안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권자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함으로써, 취약지역에 대한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추가적 지정이 가능하게 하고 야간·휴일 소아진료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수진)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 없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붙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의2(야간·휴일 소아 진료 기관의 지정) ① <u>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u>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 기관 중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4조의2(야간·휴일 소아 진료 기관의 지정) ① <u>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u> ----- ----- -----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